

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314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31470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83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원

변론 종결 2022. 11. 30.

판결 선고 2023. 2. 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83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683,65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그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박소영

판사안정현